

# 민 사 집 행 실 무

## 目 次

I. 총 론 .....	103	제7관 부동산관리명령 .....	216
II.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37		제8관 매각대금의 지급 .....	217
제1장 총 설 .....	137	제9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220
제2장 집행보조절차 .....	139	제10관 부동산인도명령 .....	222
제1절 재산명시절차 .....	139	제11관 변제절차 .....	223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145	제12관 경매신청의 취하 .....	237
제3절 재산조회 .....	149	제13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 ···	23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50	제3절 강제관리 .....	240
제1절 총 설 .....	150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240
제2절 강제경매 .....	153	제5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241
제1관 총 설 .....	153	제6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242
제2관 강제경매의 신청 .....	160	제4장 동산에 대한 집행 .....	243
제3관 압류절차 .....	166	제1절 총 설 .....	243
제4관 현금화절차 .....	179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44
제5관 공동집행 .....	212		
제6관 배당요구 .....	214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총 론

##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 2. 강제집행의 종류

집행대상에 따라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이 있고,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직접강제와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본래적집행과 대상적집행이 있다. 또 집행의 효력에 따라 본집행과 가집행, 만족집행과 보전집행이 있고,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구별된다.

금전채권의 집행에는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89조 내지 제222조) 및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223조 내지 제251조)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는 강제경매(제80조 내지 제162조)와 강제관리(제163조 내지 제171조)가 있으며, 그 외 선박에 대한 집행(제172조 내지 제186조),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제187조), 항공기에 대한 집행(제187조)이 있다.

비금전채권의 집행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제257조)과,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제258조) 및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 집행(제259조)이 있고, 작위청구권의 집행에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제260조, 민법 제389조 2항)과 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제261조)가 있으며, 또 부작위청구권의 집행과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제263조, 민법 제389조2항)이 있다.

### 3. 강제집행의 요건

#### 가.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대립되는 두 당사자를 말하며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자를 집행채권자라고 하고, 강제집행을 요구받는 자를 집행채무자라고 한다.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를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면 채권자이고 그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면 채무자이다.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라도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으면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고,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집행문의 부여되면 집행당사자로 된다.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로 된다.

집행개시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52조 1항). 이미 집행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는 물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도 새롭게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은 판결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동일하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소송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집행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집행을 수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행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대리인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집행법원·수소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 수소법원이 단독판사일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고(민소 제88조 1항),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같다.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인자격을 가진다.

#### 나.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서 기판력과는 상관이 없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sup>1)</sup>,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

1) 현행 법률에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판결{확정된 종국판결(24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24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26조)}, ② 판결 외의 집행권원{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56조), 인낙조서(56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56조), 확정된 지급명령(56조), 가압류·가처분명령(291, 301조), 집행증서(56조),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60)} 등

나.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② 파산채권표(파산법 215조), ③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채권자표(회사정리법 145조), ④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재판(회사정리법 72, 76조), ⑤ 조정조서(민사조정법 29조), 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30, 32, 34조 4항), ⑦ 가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가사소송법 12조, 민사집행법 24조), 심판(가사소송법 41조), 조정조서(같은 법 59조 2항)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같은 법 같은 항), ⑧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

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되며, 집행문이 부여될 때는 집행권원과 결합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이므로 집행할 수 없으나, 급여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그 원인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다. 또 급여의 성질이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부부동거의 무의 집행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다. 집행문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제28조 1항).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며<sup>2)</sup>, 금전지급.물품인도 등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가사심판 또는 가사사건의 상소심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가사소송법41조)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송민80-2)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가압류, 가처분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와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등), 법률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과태료의 재판, 형소법상의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또는 재도.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문은 해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과, 집행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 특허청심판원공무원이 부여한다.

---

니한 비용의 수봉결정, 소송상의 구조와 구조의 취소에 따른 비용 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12조), 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사건절차법 249조), ⑩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29조), ⑪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사소송법 477조), ⑫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에 관한 비용 또는 이들 법률에 따른 보상금액과 대가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⑬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조 1항)이 적힌 유죄판결, 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회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⑮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에 관한 재결(토지수용법 75조의2 제3항), 기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과태료결정(변호사법 90조 2항), 지방법원장의 소속 법무사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명령(법무사법 48조 3항) 등

- 2)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① 가압류.가처분명령(292, 301조), ②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한 재판의 집행(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136조 6항), 채권압류명령에 따른 채권증서의 인도집행(234조),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집행(166조 2항)), ③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477조), ④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60조, 비송사건절차법 249조),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⑥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도 집행문을 요구하였다), ⑦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조 1항) 등. 다만,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집행문의 기재례]

### ① 일반적인 경우

이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2003. . . .  
○ ○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 ○ ○ (인)

### ②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 ③ 당사자(원고)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  
기 위하여 원고 ○○○의 승계인 ○○○(○○○○○○○-○○○○○○○○)에  
게 내어 준다.

## 4. 집행기관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신속  
을 요하므로, 공정·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규정으로 집행기관을 두어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집행기관에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이 있다.

### 가. 집행관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인 단독제 사법기관이다.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  
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법원,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송달 또는 영장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나, 법정의 제반비용은 지급받는다.

독립의 집행행위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동산의 인도집  
행, 부동산·선박의 인도·명도집행,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 담보  
권의 실행 등을 위한 유체동산의 경매 등이 있고,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의 부수적  
행위에는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증권의 점유,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강

제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 또는 입찰의 실시 등이 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제16조 1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제16조 3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 나. 집행법원

집행법원이란 집행처분 또는 집행행위에 대한 협력 내지 간섭 등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법원을 말한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되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①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②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 ③ 부동산, 선박,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④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 ⑤ 채권 기타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등이 있다.

집행관이 하는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또는 이를 시정, 간섭하는 것으로서, 국군의 원조 청구, 야간.휴일집행의 허가, 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 유체동산의 특별환가명령,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이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행위(집행관에 대한 협력행위도 포함)는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으나, 즉시항고는 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한다.

## 다.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란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말한다.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경우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의 판정이 필요한 때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있다.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촉탁은 집행공조기관으로서 행하는 경우이다.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대체집행, 간접강제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각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5. 강제집행 개시요건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존부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말한다.

요건이 존재하여야 집행은 개시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그 요건이 존재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이 있다. 적극적 요건에는 각종의 집행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과 특정한 집행에만 필요한 특별요건이 있다.

집행당사자의 표시 및 집행권원의 송달은 일반적 요건이고, 특별요건에는 집행문 또는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의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집행불능의 증명 등이 있다. 집행개시요건은 집행기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 가. 적극적 요건

### (1) 집행당사자의 표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당사자의 표시가 있어야 집행기관이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집행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성명뿐만 아니라 아호나 상호도 무방하다. 집행정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한 집행은 집행권원 없이 한 집행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무효이다.

### (2)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할 집행권원은 이미 송달하였거나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고 집행정본이 아니며, 등본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재판에 의한 집행, 과태료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공정증서 정본 등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 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 정본 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집행권원의 송달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므로 채권자는 증명서로써 송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에도 송달증명서의 제출을 요한다. 이행권고결정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있어서는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송민 2000-5).

###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승계인)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승계집행문)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때는 항상 집행개시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증명서로써 조건의 이행사실 또는 승계사실(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을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제출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이

필요 없다.

집행문 및 증명서는 그 등본을 송달하며, 이를 누락한 집행행위의 효력은 집행권원의 송달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 (4) 이행일시의 도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제40조 1항). 위 시일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것임을 요한다. 확정기한의 도래는 역일(歷日)의 조사에 의하여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조사에 맡기고 있다.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제15조) 등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5)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공탁증명서 기타 법원의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이의 등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40조 2항, 제16조).

담보의 제공은 공탁 후 공탁서 정본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나 담보제공명령법원에 제출하여도 된다.

담보제공 없이 실시한 집행은 당연무효이나, 담보제공증명서 등본의 송달만이 미비된 집행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전에 송달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은 반대급부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여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이행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권리관계의 인낙이나 의사진술을 할 의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에 그 반대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된다.

또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항에 일정한 반대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써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 전에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관과 동행하여 제공하거나 집행관이 채권자의 위탁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고 제공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 (7) 본래 청구권의 집행불능증명

대상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집행권원상의 의무가 그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의무의 집행불능 여부는 집행기관이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집행불능증명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다.

#### 나. 소극적 요건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말한다. 집행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발견되면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장애는 집행의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각개의 집행행위에 특별한 장애사유(압류금지물의 압류금지 등)와 구별된다.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제61조), 채무자를 위한 화의절차의 개시(화의법 제40조 1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회사정리법 제67조 1항),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의 제출(제49조), 집행채권의 압류(제227조 1항), 특수보전처분의 집행(파산법 제145조 1항 등) 등이 있다.

### 6.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법률상 특정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각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예컨대, 연기신청)에 따라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의 정지가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 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 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특히 집행의 제한이라고 한다.

#### 가.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49조 1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규칙 제50조 1항),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0조 1항).

-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판결,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판결 등
-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판결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소법 제215조)
-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 집행의 종국적 불허가를 선고하는 취지의 재판, 예컨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제34조),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를 인용한 결정(제16조, 제15조),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 위 ③의 재판 중에서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 예컨대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등
-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결정 또는 판결(민소법제 55조 1항,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 제47조 1항, 제48조 3항 등)
- ⑥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넓은 의미의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을 말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49조 2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규칙 제50조 1항),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한다(50조 1항).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을 말한다.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49조 3호)

매수신고의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제93조 3항), 후에 제출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집행 면제선고가 있는 가집행선고 판결(민소법 제213조 2항, 3항)에서의 담보제공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집행할 판결이 있는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9조 4호)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집행의 종국적인 저지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4조)에 의하여

야 하나, 채권자가 작성한 것을 매수신고 전까지 제출하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일응 정지하되 정지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 증서는 판결선고 후의 증서뿐 아니라 기타 집행권원 성립 후의 증서도 포함되며 공정증서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출하는 서면은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예컨대 영수증,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예컨대 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적은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 등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변제수령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채권자에 대한 압류명령, 전부명령정보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만, 변제공탁서에 관하여는 다름이 있다.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제51조 1항).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제51조 2항).

경매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무자의 매각기일연기신청서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정지효과를 가져올 수 없고, 위 연기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된다.

---

3) 대법원 1979. 10. 31.자 79마132 결정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제49조 5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규칙 50조 1항) 집행 취소사유이다(제50조 1항).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본안심리중 소가 취하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등에서 그 사실을 적은 조서의 등본 등이 집행정지서류가 된다. 그러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제49조 6호)

매수신고 후에 제출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93조 3항),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0조 1항). 不執行의 합의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에 적힌 경우를 말한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정지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신청에 의한 정지(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한 정지)는 집행기관에 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의 서류는 집행신청 후이면 집행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집행신청 전, 즉 강제경매 신청 전에는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집행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제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규칙 제50조 1항).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제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50조 2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규칙 제50조 3항). 제49조 3호, 4호, 6호의 서류는 매수의 신고가 있는 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93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제266조 1항 1호 내지 5호의 문서가 제출된 때에도 위에서 본 각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제275조).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

한다(제50조 1항).

#### 다.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보의 제공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는 때는 그 담보제공증명서를 채권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제영수증서의 제출이나 의무 이행의 유예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소정의 정지기간을 경과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한다.

집행취소서류(제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제출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후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것이 증명되더라도 이미 끝난 집행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종전의 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익으로써 다룰 수 있다.

#### 라. 집행의 취소

집행의 취소는 집행절차 진행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제49조 1호, 5호의 서류를 대금납부 전에 제출한 경우와, 3호, 6호의 서류를 매수신고 전에 제출한 경우(매수신고 후에 제출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취소한다.

그 밖의 개별적 취소사유로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멸실 등,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부동산의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관할위반, 보증의 제공 등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 또는 집행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예컨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의 취소는 집행처분의 존재를 없애는 방법으로 한다. 즉, 유체동산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행위인 재판(예컨대 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효과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7.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 가. 총 설

#### (1) 채권자의 구제방법

- ①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② 집행문 부여의 소
- ③ 집행에 관한 이의와 즉시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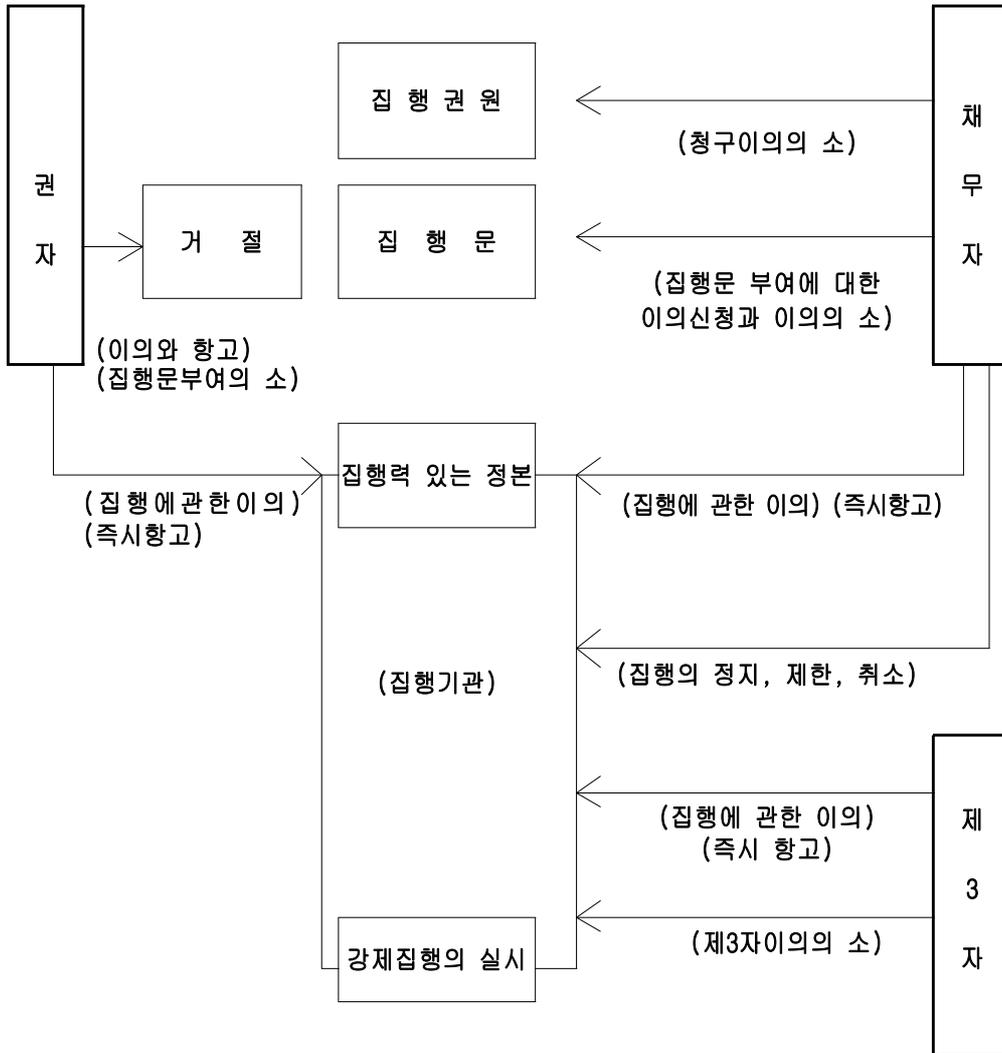
#### (2) 채무자의 구제방법

- 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②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③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즉시항고
- ④ 청구이의의 소

#### (3) 제3자의 구제방법

- ① 집행에 관한 이의와 즉시항고
- ② 제3자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구제절차의 도해]



## 나.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 의 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기를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속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59조 2항 유추).

### (2) 신 청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법 제161조). 법원사무관등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소속법원에, 공증인 등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재 판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한다.

## 다. 집행문 부여의 소

### (1) 의 의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이를 집행문 부여의 소라 한다. 원고적격자는 채권자이고, 피고적격자는 채무자이다.

### (2) 관 할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조서에 관하여는 제1심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하며(제33조, 제57조),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각종 조정조서에 관하여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것이 성립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제58조 4항, 5항),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제59조 4항)이 관할한다.

이들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조).

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한다.

## 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1) 의 의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한다(제34조).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든가, 집행문 부여의

거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결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여된 경우도 상관없다.<sup>4)</sup> 이 이의신청은 집행문을 내어 준 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의 개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된 뒤(전체로서의 집행이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다.<sup>5)</sup>

## (2) 이의사유

(가) 집행문 부여를 위법으로즉 부여시에 조사하여야 할 부여요건의 흠은 모두 이의사유로 된다.

### ① 형식적 요건의 흠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집행증서의 무효, 판결 후 소의 취하), 집행력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판결의 미확정,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의 확정), 집행문의 방식 위배(재판장의 명령이 없는 경우) 등이다.

### ② 실제적인 요건의 흠

조건 성취의 사실(제30조 2항) 또는 승계의 사실(제31조 1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빠져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주장할 수 있다(제45조 단서).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의 부존재와 같은 실제적 요건의 흠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나) 이의사유는 이의에 관하여 판단하는 시기(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결정한다. 집행문을 내어 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3) 관 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제34조 1항, 제1심 법원일 때도 있고 상급법원일 때도 있다),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제59조 2항)의 전속관할이다.

## (4) 재 판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 (5) 잠정처분

이의신청에 따라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장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직권으로 집행의 일시정지 그 밖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담보제공 없이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제34조 2항, 제16조 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대법원 1979. 8. 25.자 78마249 결정

5) 대법원 1992. 3. 6.자 92마46 결정

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의 의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이다(제45조). 채권자의 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 (2) 이의사유

이 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이다. 그 외의 사유로만 집행문 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다.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을 이의신청으로 다룰 수도 있으므로(제45조 단서), 채무자는 본소와 이의신청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동일 사유로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3) 관 할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45조, 제44조 1항). 그 밖의 경우는 집행문 부여의 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과 같다.

## (4) 재 판

이 소에 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5조). 청구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을 한다. 이 판결에는 직권으로 제46조에 정해진 명령을 하거나 이미 한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하고,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제47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제49조 1호, 제50조).

## (5) 잠정처분

이 소의 제기는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지는 못하나 수소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46조, 제47조).

# 바. 집행에 관한 이의

## (1) 의 의

민사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관한 위법·부당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제16조 1항).

##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을 가진 여부

는 묻지 않는다(예, 야간·공휴일 집행의 허가 등).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예,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공과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강제관리인의 감독 등)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의 절차란 강제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한다.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외에 집행관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조사, 판단하여 지켜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집행관의 사실행위가 위법인 경우, 집행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예컨대, 현황조사, 매각의 실시 등)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이의사유

집행기관이 집행을 실시할 때 그의 책임하에 조사·판단하여야 할 집행절차의 형식적 흠이 이의사유로 된다.

예컨대, 집행권원의 흠, 집행정본의 흠,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흠, 집행장애사유의 무시, 집행위임의 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제16조, 제3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이의신청은 집행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다.<sup>6)</sup> 상대방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상대방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나서 마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의 수수료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구술신청에는 조서에 인지를 붙인다.

#### (5) 심리와 재판

이의에 대하여는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제3조 2항).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법 제134조 2항).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좇아 그 집행을 하여야 할 것 또는 집행을 불허한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6)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스스로 취소하거나 바꾼다.

#### (6) 잠정처분

이의신청이 있어도 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그 재판 전에 집행정지 또는 집행속행명령(이른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16조 2항). 신청인은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정지 또는 집행을 속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민소법 제500조 3항의 유추). 집행방법의 이의를 신청한 자는 위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구할 신청권은 없으나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지는 필요없다.

## 사. 즉시항고

### (1) 의 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5조 1항).

원래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과 명령에 대한 독립한 불복신청 방법으로서, 불복신청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항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시항고로 구별되는데, 강제집행절차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된다.

### (2) 당사자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매각허부결정에서의 매수인·매수신고인, 채권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등도 포함된다.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은 없다. 따라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3) 항고방법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즉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 3항),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며(제15조 5항),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제15조 7항).<sup>7)</sup> 항고제기기간은 항고권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 고지를 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기간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를 붙여야 한다.

### (4) 집행정지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제기되면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나(민소법 제447조)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15조 6항 본문).

그러나 이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차별적으로 부정하면 항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 이에 법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을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으로 나누어, 재판의 내용이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즉시집행력을 부정하여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제17조 2항), ② 매각

7) 항고이유서 강제제출제도는 민사소송법에는 없던 것이다.

허가 여부의 결정(제126조 3항), ③ 선박은행허가결정(제176조 4항), ④ 전부명령(제229조 7항), ⑤ 채권의 특별한 현금화명령(제241조 4항) 등이 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제15조 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5조 6항 단서).

## 아. 청구이의의 소

### (1) 의 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제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즉 이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와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제도에서 실제적 권리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막는 구제방법이다.

### (2) 소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룰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제283조, 제301조)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제288조, 제301조)이 인정되므로 이 소로 다룰 수 없다. 대체집행(제260조 1항)의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형소법 제477조), 확정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sup>8)</sup>도 대상이 아니다.

적용이 긍정되는 것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에서 수거비용지급명령(제260조 2항), 간접강제에서 배상금지급명령(제261조 1항), 임의경매(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부동산인도명령 등이 있다.

### (3) 이의원인

이의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이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증서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가 이에 해당한다.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사유라면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여도 무방하다.

####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혼동, 계약해제, 화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청구권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작위를

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일부변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부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청구권의 불발생

사회질서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청구권의 귀속변동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부집행(不執行)의 합의, 한정승인, 권리의 남용

부집행의 합의란 특정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된다.<sup>9)</sup>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상속인)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그 자체가 권리의 남용 내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예컨대, 확정판결의 편취)에 채무자의 구제방법으로서 판례는 편취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소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인정한다.<sup>10)</sup>

#### (4) 이의의 동시 주장

채무자는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제44조 3항). 집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라 함은 ‘같은 소송에서’라는 의미이므로 이의의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

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1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 (5) 소송절차

### (가) 소의 제기 및 당사자적격

소장에는 청구의 원인으로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과 그 이행의무에 대한 이의의 원인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멸을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값이고 집행된 목적물의 값이 아니다.

이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미확정의 판결인 때에는 확정된 뒤에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을 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자이다. 피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 여부를 묻지 않는다.

### (나) 관할법원

- ① 확정판결 - 제1심 판결법원(제44조 1항). 가사판결이면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58조 4, 5항)
- ③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그 재판을 한 제1심의 법원(제57조, 제56조 1호, 제44조 1항).
- ④ 청구의 인낙조서, 소송상의 화해조서 - 제1심 수소법원(제57조, 제56조 4호, 제44조 1항).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⑤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 절차를 행한 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⑥ 집행증서 - 채무자(즉, 이 소의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제59조 4항)

## (6) 판 결

이의를 인용할 때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을 한다.

## (7) 잠정처분

(가) 본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6조 1항).

그런데 본소의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인지 1,000원, 신청사건부 등재, 별책 조제)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6조 2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다(제46조 3항, 4항).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나, 최근에는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향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반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는 허용되지 않고<sup>11)</sup>,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자.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제48조 1항).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행기관은 외관에 따라서만 책임재산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실제적 심사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외관을 기준으로 집행이 행하여지는 한 책임재산 외의 물건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지더라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소는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는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1) 이의원인

11)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이익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제48조 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는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소송절차

관할법원은 집행법원 곧 집행행위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48조 2항, 제21조). 사물관할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즉,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제48조 2항).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된다. 피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채권자이며 집행관 기타 집행기관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제3자의 채권자는 제3자를 대위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인 것을 이유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청구에 관한 이익의 소와 같으며, 소송 목적의 값은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4호). 즉 소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 점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 가액의 3분의 1, 지상권일 때에는 그 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같은 규칙 제10조).

## (3) 잠정처분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소의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46조,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이익의 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3항). 이 재판에 대하여서도 불복을 할 수 없다.<sup>12)</sup>

청구이익의 소와 다른 것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정지·취소의 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집행비용

강제집행(협의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 대법원 1963. 3. 30.자 63마5 결정

집행비용	집행준비비용	재판상의 비용	집행문부여신청, 집행권원 송달신청 등의 수수료(인지)
		당사자 비용	집행문부여신청서기로 및 제출비용
	집행실시비용	재판상의 비용	강제집행신청 또는 속행신청수수료(인지), 유체동산강제집행에 관한 집행관 수수료
		당사자 비용	강제집행신청서기로, 배당기일 출석 일당

집행준비비용은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작성·부여에 필요한 비용,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서류의 교부, 송달비용이나 수수료, 인지대 등 집행준비비용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집행비용이 된다.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강제집행의 비용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제53조 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나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기까지는 우선 채권자가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을 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을 때 또는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에는 예납할 필요가 없다.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평가료, 경매수수료 등)이다. 송달료 이외의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서 송달료와 별도로 취급된다.

서류의 송달 및 송부비용은 5회분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수를 곱한 액(1회분 왕복 특별송달 취급수수료 2,260원×5회×당사자 수)에 상당하는 우표 또는 현금을 자진 예납의 형식으로 예납받는다.

부동산경매사건과 같이 송달료 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에 10회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그 기준이 된다.

강제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그러나 본래의 강제집행이 인도집행과 같은 비금전집행이거나, 금전집행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에 의하며,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9.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 가. 담보 제공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 정지 또는 취소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될 수도 있는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시키는 집행법상의 수단이다. 집행에 관한 담보도 소송비용의 담보 등과 함께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1) 채무자의 담보 제공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민소법 제500조).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같은 법 제501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제46조, 제47조)에 의한 집행정지 및 취소, 집행문 부여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6조).압류금지 물건 확장신청(제196조)에 의한 집행정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86조, 제301조) 및 취소신청(제288조, 제307조) 등이 있다.

#### (2) 채권자의 담보 제공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민소법 제500조).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같은 법 제501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6, 제47조).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제46조, 제47조) 및 이의신청(제34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압류금지물 확장신청 등에 있어서 집행속행(제196조), 가압류(제280조) 및 가처분(제301조)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명령의 변경(제286조, 제301조) 등이 있다.

#### (3) 제3자의 담보 제공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제48조, 제46조, 제47조 1항)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제16조 2항) 등이 있다.

### 나. 보증 제공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모두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담보와 전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각칙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인수할 채무나 상계할 매수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각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이고, 담보가 아니다.

-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으로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될 때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제102조 2항, 제104조 1항)
- ② 매수신청시에 매수신고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제113조)
-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제130조 3항)
- ④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제181조 1항, 2항)

### 다. 공탁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하여 이행으로써 또는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개

념과 본질을 달리한다.

- ① 보전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제282조, 제299조: 가압류해방공탁)
- ②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제248조 1항: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③ 배당협약이 불성립된 때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22조 1, 2항)
- ④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한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58조 6항)
- ⑤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96조 4, 5항)
- ⑥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제236조 2항)